

---

#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2020. 12.

 **극악방송**

# || 목 차 ||

I. 인권영향평가 목적 .....	1
II. 인권영향평가 개요 .....	1
III. 인권영향평가 종류 .....	2
IV.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	3
V. 인권영향평가 결과(세부) .....	4
VI. 인권영향평가 전문위원 평가 .....	8
VII. 인권경영 증점 추진 과제 .....	10
VIII. 행정사항 .....	11

(붙임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붙임2)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 12. 29(화) / 경영기획부

## I | 인권영향평가 목적

- 우리 기관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권경영 발전 도모

## II |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근거] 인권경영 매뉴얼,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 [평가일시] '20. 11. 27(금) ~ '20. 12. 18(금)
- [평가내용]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 인권경영 담당부서(경영기획부) 체크리스트 1차 평가 → 외부위원(전문가) 2차 평가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

### 【 인권영향평가 개별지표 평가표 】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50%	0%	평가 제외	
	분야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답변에 따라 비율로 점수 계산				

### 【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평가표 】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평 점	100~90점	90점 미만~80점	80점 미만~70점	70점 미만~60점	60점 미만

- ※ 평가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 \* (정보없음) 지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정보가 없는 경우
- \*\* (해당없음) 우리기관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 III | 인권영향평가 종류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고객관리 등에 대한 평가
- 지표구성: 8개 분야, 25개 항목, 96개 지표

평가 분야	항목/지표	평가 분야	항목/지표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 / 21개	산업안전 보장	4개 / 16개
고용상의 차별 금지	3개 / 14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개 / 5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2개 / 6개	정보 인권 보호	1개 / 3개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4개 / 18개	직원 인권 보장	4개 / 13개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특정 사업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가
- 지표구성: 5개 분야, 5개 항목, 17개 지표
  - 5개 사업에 맞는 평가분야를 적용하여 점수 및 등급 도출

평가 분야	항목/지표
외부인력 차별 금지	1개 / 5개
방송인권 보호	1개 / 3개
재산권 보호	1개 / 3개
사업고객 정보 보호	1개 / 2개
시청자 및 청취자 인권보호	1개 /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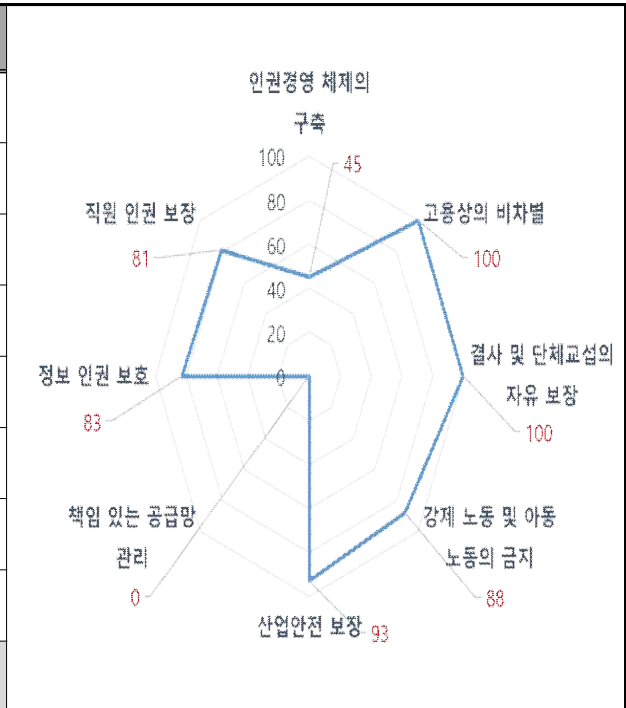
## IV

#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는 74점으로 다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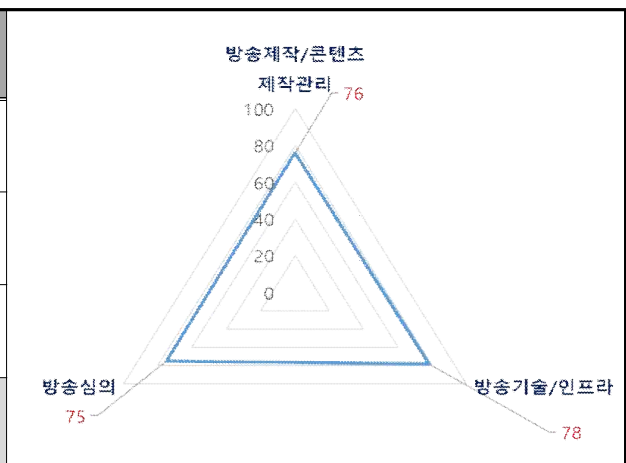
연번	분 야	평점	등급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5점	마
2	고용상의 차별 금지	100점	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점	가
4	강제노동의 금지	88점	나
5	산업안전 보장	93점	가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0점	마
7	정보인권 보호	83점	나
8	직원 인권 보장	81점	나
-	평균 점수	74점	다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는 76점으로 다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번	분 야	평점	등급
1	방송제작/콘텐츠 제작관리	76점	다
2	방송기술/인프라	78점	다
3	방송심의	75점	다
-	평균 점수	76점	다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5개 항목, 21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인권존중 정책선언	2개	2개				75점	다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개		2개			33점	마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2개	1개	1개			63점	라
인권경영 성과	1개	4개				60점	라
구제절차 마련			5개			0점	마
<b>평균 점수</b>	<b>6개</b>	<b>7개</b>	<b>8개</b>	-	-	<b>45점</b>	<b>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존중 정책선언’은 내부직원들의 의견만 수렴하였으므로,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선언문, 규정 등 개정 검토 필요</li> <li>○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인권 현안 도출 및 정책 반영 등 필요</li> <li>○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시행으로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집단과의 협의 과정 필요</li> <li>○ 이해관계자 등 모든 국민에게 인권영향평가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li> <li>○ 구제절차 체계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함. 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을 수립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함</li> </ul>							

## ② 고용상의 차별 금지(3개 항목, 14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고용상 비차별	5개					100점	가
고용상 남녀 비차별	6개					100점	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4개</b>	-	-	-	-	<b>100점</b>	<b>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급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li> <li>○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 외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차별적 요소에 대한 지표개발 필요</li> </ul>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2개 항목, 6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4개					100점	가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2개	-	-
<b>평균 점수</b>	<b>4개</b>	<b>-</b>	<b>-</b>	<b>-</b>	<b>2개</b>	<b>100점</b>	<b>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기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되어서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단체교섭은 진행하지 않았음</li> <li>○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 필요함</li> </ul>							

④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4개 항목, 18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강제노동 금지	6개					100점	가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1개			0점	마
연소자 고용 금지	1개				4개	100점	가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개	-	-
<b>평균 점수</b>	<b>7개</b>	<b>-</b>	<b>1개</b>	<b>-</b>	<b>10개</b>	<b>88점</b>	<b>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에서는 강제노동, 연소자 고용을 하지 않음. 단, 강제노동은 퇴직, 근무 과정 등에서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모든 강제 조치를 포함하므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검토</li> <li>○ 단,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및 강제노동을 모니터링하는 절차에 있어 보완 필요</li> </ul>							

⑤ 산업안전 보장(4개 항목, 16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작업장 안전	3개	1개			1개	88점	나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2개	1개			1개	83점	라
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등	4개					100점	가
산업재해 피해자근로자 지원	3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2개</b>	<b>2개</b>	<b>-</b>	<b>-</b>	<b>2개</b>	<b>93점</b>	<b>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은 정도 준수되고 있으나,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보완 필요</li> <li>○ 법령을 준수하여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으나,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 검토</li> </ul>							

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2개 항목, 5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3개			0점	마
모니터링 실시			2개			0점	마
<b>평균 점수</b>	-	-	<b>5개</b>	-	-	<b>0점</b>	<b>마</b>

○ 기관운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인권경영에 있어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평가  
 ○ 협력회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의 인권 영향 심각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계약, 구매 등에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계약 상대방의 인권성과 모니터링 필요

⑦ 정보 인권 보호(1개 항목, 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정보 인권 보호	2개	1개				83점	나
<b>평균 점수</b>	<b>2개</b>	<b>1개</b>	-	-	-	<b>83점</b>	<b>나</b>

○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정보 인권 보호하고 있음  
 ○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이 직원에게 경영과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조치 필요

⑧ 직원 인권 보장(4개 항목, 1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폭력예방	2개	1개				84점	나
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3개		1개			75점	다
일·가정 양립	2개					100점	가
휴식권	3개		1개			75점	다
<b>평균 점수</b>	<b>10개</b>	<b>1개</b>	<b>2개</b>	-	-	<b>81점</b>	<b>나</b>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괴롭힘 겪은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 부족  
 ○ 협력사에 발생한 성희롱 등 성폭력에 관한 구제절차 마련 필요  
 ○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긴급상황 제외하고 퇴근 이후 또는 공휴일에 메신저, SNS를 포함한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방안 필요

##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 ① 방송제작/콘텐츠 제작·관리(4개 항목, 1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외부인력에 대한 차별금지	3개	2개				80점	나
방송인권 보호	1개	2개				67점	라
재산권 보호	2개	1개				83점	나
사업고객 정보 보호	1개	1개				75점	다
<b>평균 점수</b>	<b>7개</b>	<b>6개</b>	-	-	-	<b>76점</b>	<b>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력 채용 시 사용하는 별도 계약서를 개정하여, 차별 금지 관련 내용까지 포함</li> <li>○ 우리 기관과 자주 일하는 외부인력(프리랜서, 외부업체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처우개선 필요</li> <li>○ 콘텐츠 제작 수행 인력 대상으로 저작권, 재산권 등 관련 교육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필요</li> <li>○ 제작 또는 콘텐츠 관리 시 사업수행 인력의 저작권, 소유권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필요</li> <li>○ 업무상 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시정 요구 및 관계 단절 등 관련 내용 반영</li> </ul>							

### ② 방송 기술·인프라(2개 항목, 7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외부인력에 대한 차별금지	3개	2개				80점	나
사업고객 정보 보호	1개	1개				75점	다
<b>평균 점수</b>	<b>4개</b>	<b>3개</b>	-	-	-	<b>78점</b>	<b>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기관과 협업 잦은 외부인력(프리랜서, 외부업체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필요</li> <li>○ 업무상 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시정 요구 및 관계 단절 등 관련 내용 반영</li> </ul>							

### ③ 방송 심의(1개 항목, 4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시청자 및 청취자 인권 보호	2개	2개				75점	다
<b>평균 점수</b>	<b>2개</b>	<b>2개</b>	-	-	-	<b>75점</b>	<b>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자체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음</li> <li>○ 외부기관에서 방송심의 관련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필요</li> <li>○ 공공기관으로서의 과도한 광고효과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 관련 절차 필요</li> </ul>							

### □ 위원별 전문분야 선정

- (평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윤리인권경영위원 중 외부위원으로만 구성

NO	평가 분야	항목수	지표수	평가위원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	21개	정○○
2	고용상의 비차별	3개	14개	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2개	6개	
4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금지	4개	18개	
5	산업안전 보장	4개	16개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개	5개	정○○
7	정보 인권 보호	1개	3개	
8	직원 인권 보장	4개	13개	

NO	사업명	항목수	지표수	평가위원
1	차별금지	1개	5개	장○○
2	방송인권 보호	1개	3개	
3	재산권 보호	1개	3개	
4	사업 고객정보 보호	1개	2개	
5	시청자 및 청취자 인권보호	1개	4개	

### □ 위원별 평가 의견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결과(보완사항)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정책선언은 기관의 최고 인권규범이자 실천의지의 집약이므로 기관의 경영이념과의 연계성, 국제 국내 인권규범과의 조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인권이슈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음</li> <li>○ 인권경영 성과 보고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이는 논리상 예, 보완필요, 아니오로 평가해야 하고 구제절차 마련도 동일함</li> </ul>
2. 고용상의 차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외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차별 요소(인권위법 제2조 제4항, 차별사유 18가지 포함)에 대한 지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느꼈는지에 대한 파악</li> <li>○ 차별 금지를 위한 국악방송 내부규정 강화(세부적인 내용 포함)</li> </ul>
<b>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될 노사관계 변화상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노동3권 보장과 회사의 사회적 목적 실현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li> <li>○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사협의회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li> <li>○ 노동3권 보장 부분의 세부 지표(노동조합 가입·활동, 단체교섭, 쟁의권 부분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포함) 보완 필요</li> </ul>
<b>4.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과정 전반(채용-재직-퇴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근로 유형들을 체크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감시장치 검토</li> <li>○ 강제노동문제는 연소자, 특수고용(프리랜서, 위탁, 용역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들은 직접고용자가 아니고, 개별 출연자 혹은 협력사 소속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개별 출연계약이나 협력사와 위·수탁 계약 시 강제근로금지 및 노동 존중 관련 약정을 맺어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li> </ul>
<b>5. 산업안전 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폐소생 응급조치 같은 실용적인 직원교육도 제공 필요</li> <li>○ 지표3 부분은 보건업체, 안전업체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상시 체크하고 필요 공간이나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였으면 함</li> <li>○ 임산부 안전 및 위생은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용적인 방안 모색 필요</li> <li>○ 산업안전 문제 관련 장기적인 고충 청취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함</li> <li>○ 무대 설치, 조명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협력업체와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li> <li>○ 50인 이상은 장애인고용의무가 있으므로, 장애인 특별전형 채용을 확보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 친화적인 작업장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li> </ul>
<b>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부분은 현재 사회적 상황으로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기과제로서 인권경영의 사회적 확산 정도에 맞추어 조금씩 실행해 나가되 우선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어려운 과제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 있음</li> </ul>
<b>7. 정보 인권 보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인권보호 1번 지표에 보완 필요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을 확인하여 중요도와 시급도를 고려하여 차년도 인권경영 계획에 반영 필요</li> </ul>
<b>8. 직원 인권 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에 있어 심리상담 제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조속히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li> <li>○ 휴식권과 관련하여 13번 지표에서 아니오로 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일절이라는 문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라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되는 바 이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함</li> </ul>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결과(보완사항)
1.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력에 대한 차별금지 4, 5번 처우와 편익에 보완필요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을 확인하여 인권경영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li> <li>○ 직전년도(2019년)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체불 등이 보고되는 등 실제 차별처우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 있음</li> </ul>
2. 방송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제작인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 외부인력도 콘텐츠 내용상의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비하고, 인권의식의 향상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교육을 연간교육계획에 반영할 필요 있음</li> </ul>
3. 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적 재산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후 더 엄밀히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검토하여 스태프를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각종 소송 등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국악방송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li> </ul>
4. 사업 고객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고객과 정보누설을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보보호는 상호이득이 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이해시키고, 상호 간 정보보호를 지향하기 위해서 사업고객과 체결하는 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 있음</li> </ul>
5. 시청자 및 청취자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자 공영전문방송이라는 국악방송의 위상을 고려하여 외부심의 결과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 있음</li> </ul>

VII

인권경영 중점 추진 과제

□ 2021년 인권경영 추진 과제

구분	보완사항
기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이슈를 반영한 환경권 보장(일회용품 사용금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 등) 항목 신설 필요</li> <li>○ 이해관계자, 인권이슈, 인적 차별요소(인권위법 제2조 제4항, 차별사유 18가지 포함) 등을 반영한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개정</li> <li>○ 윤리인권침해 시 구제절차 마련 및 운영</li> <li>○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 노사협의회의 활용방안 모색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사무실 및 작업장, 휴게실 등 환경개선 활동</li> <li>○ 기관 경영, 사업활동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정보 공유</li> </ul>
<b>사업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심의 결과 즉각 반영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li> <li>○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관련 보호 방안</li> <li>○ 외부인력(프리랜서, 외주업체 등) 대상 콘텐츠 내용상의 인권보호 매뉴얼 구비</li> <li>○ 국악방송과 계약대상자 상호 정보보호 이행 효력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 신설 검토</li> </ul>
<b>체크리스트 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경우 인권영향의 파급성, 설립 목적 및 미션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li> <li>○ 지표담당자 의견, 인권이슈, 인적 차별요소(인권위법 제2조 제4항, 차별사유 18가지 포함) 등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 보완</li> </ul>
<b>교육, 사내문화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심폐소생 응급조치 교육, 인권 교육 추진</li> <li>○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 수준, 차별, 보완사항 등 도출(필요 시 인터뷰)</li> <li>○ 인권 침해 당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도 실시</li> <li>○ 내년도 인권영향평가에는 지방국까지 포함하여 진행</li> <li>○ 임산부 안전 및 위생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 청취</li> </ul>

※ 그 외 보완사항들은 장기적인 해결과제로 분류하여 연도별 업무 추진

## VIII

## 행정사항

### □ 제1회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인권영향평가 전체 평가 공유 및 결과보고 심의, 의결
  - 개선방안 도출, 구제절차 수립 등 후속 조치 진행
  - 2021년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에 해당 내용 반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진행
  - 온-나라 PC영상회의 등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

###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공개

-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 등에 인권영향평가 결과공개

### 붙임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1부

###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1부. 끝.